

보도시점

2025. 1. 2.(목) 조간
2025. 1. 1.(수) 12:00

배포

2024. 12. 31.(화)

2025년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

-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-
-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*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월 364만 8,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.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**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* (선정기준액)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, 생활 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(법 제3조)

** (소득인정액) 노인가구의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

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(단독가구 기준) 높아졌으며,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.4%, 공적연금 소득이 12.5%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.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(건물 $\Delta 4.1\%$, 토지 $\Delta 0.9\%$) 하였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< '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>

구분(가구)		'24년	'25년	증가액(비율)
선정 기준액	단독	213만 원	228만 원	+15만 원(+7.0%)
	부부	340.8만 원	364.8만 원	+24만 원(+7.0%)

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.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·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확대한다.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*한다.

* (현재)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
→ (개선)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

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.

*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: (주관) 양 당사자 의사합치 + (객관) 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

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,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할 수 있다.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요청하면,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.

*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: (국번없이) ☎ 1355

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.

한편,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, 관련 예산은 6.9조 원에서 26.1조 원으로 약 3.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“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

담당 부서	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	책임자	과 장	조승아 (044-202-36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현 (044-202-3672)



□ **[기초연금 지급대상]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%**

-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(**선정기준액**)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,
 -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**소득인정액**)이,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
- **[선정기준액]**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,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, 주택 공시가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

<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>

연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단독가구	148만원	169만원	180만원	202만원	213만원	228만원
부부가구	236.8만원	270.4만원	288만원	323.2만원	340.8만원	364.8만원

- **[소득인정액]**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
 - 소득은 근로·사업·재산·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,
 - 재산은 일반재산·금융재산 등을 반영
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$$\begin{aligned}
 & \left\{ \begin{aligned} & \{(\text{일반재산} - \text{기본재산액 공제}^*) + (\text{금융재산} - 2,000\text{만원 공제}) - \text{부채}\} \\ & \times \text{소득 환산율}(4\%) \div 12\text{개월} + P^{**} \end{aligned} \right. \\
 & + (\text{근로소득} - 112\text{만원 공제}) \times 70\% + \text{기타소득}
 \end{aligned}$$

* **(기본재산액) 주거유지 비용 공제**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

** **(P값)**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**고급 회원권**(골프, 승마, 콘도 등) 및 **고급 자동차**(4,000만원 이상)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